

[별표 12] <개정 2012.8.31>

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(제94조관련)

1. 앞면창유리상의 다음 각목의 점들이 포함된 창유리면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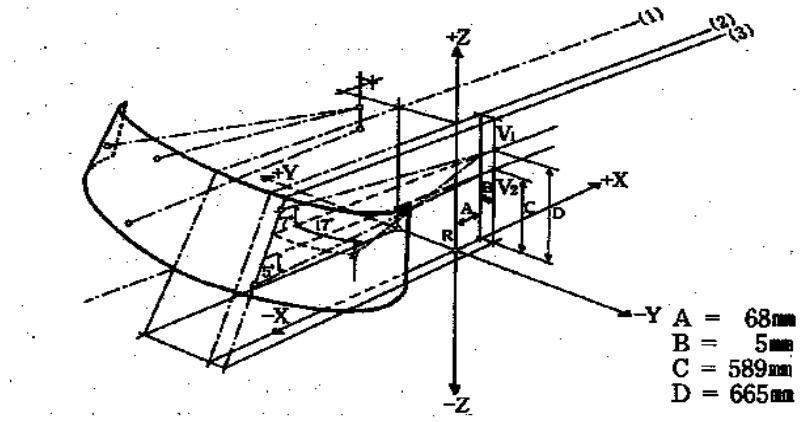
가. V_1 점 전방 수평좌향 17도인 점

나. V_1 점 전방 수평상향 7도인 점

다. V_2 점 전방 수평하향 5도인 점

라. 위의 3개의 점들이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에 각각 대칭인 점들

V점 및 앞면창유리 기준점의 위치



주 : (1)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
(2)는 착석기준점(R점)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
(3)은 V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
2. A-필라는 두 개 이하이어야 하며, 그 방해각은 6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3. 다음 각목의 면으로 구성된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 안에는 A-필라, 창분리지대, 실외 라디오안테나, 후사경, 창담이기를 제외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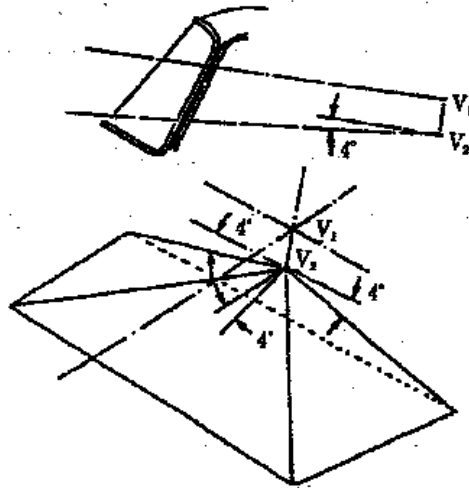
가. V_1 점을 지나는 수평면 아래부분

나. X-Z면에 수직하면서 V_2 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

다. Y-Z면에 수직하면서 V_2 점을 지나는 면과 좌측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

라. Y-Z면에 수직하면서 V_2 점을 지나는 면과 우측하향 4도인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

운전자전방시계범위



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범위(S범위)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는 운행정보를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의해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부분,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이 있을 수 있다.

가. X-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1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아랫부분

나. X-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

다. V점에서 A-필라를 지나는 면의 좌·우측 내부

S범위

